한화투자증권(주) 기업지배구조헌장

2022년 2월 22일



전 문

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(이하 회사)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,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자산관리 서비스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다.

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.

제 1 장 주주

제1조(주주의 권리)

-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.
-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

제2조(주주의 공평한 대우)

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,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

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.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의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주주의 책임)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,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이사회

제4조(이사회의 기능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표이사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②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
- ③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생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외이사)

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(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인사로)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7조(이사회의 운영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의 3일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하고 회의자료를 발송하여야 하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주요 안건과 경과 요령 및 그 결과와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- 1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 - 2. 감사위원회
 - 3. 위험관리위원회
 - 4. 보수위원회
 - 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정관 제37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,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위원회의

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,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업무의 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⑤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.
- ⑥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사의 책임)

-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, 그 행위에 중과실 또는 악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.
- ③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의 성실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가 및 보상)

- ①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, 이 결과는 보수와 재신임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3 장 감사기구

제12조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, 집행기관,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,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회의 개최시마다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.
- ⑦ 감사위원 후보는 회사 정관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.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3조(외부감사인)

①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, 선임 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되어야한다.

- ②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이해관계자

제14조(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)

- ① 회사는 주주, 임직원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,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.
-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.
-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, 분할, 감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.
-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15조(윤리경영)

- ① 회사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고객 보호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게시한다.
- ③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16조(공시)
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법령상 요구되는 공시 외에도 필요한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,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④ 회사는 공시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동시에 동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2년 2월 2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 공표한다.